

7 칼빈의 디아코니(Diakonie)*

김옥순 박사 / 두레교회, 디아코니학

1. 들어가면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요구는 개혁교회 속에서 수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요청이 진지하게 수용되는 곳에는 결정적인 질문이 따르게 된다. 즉, 우리는 교회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주님이시며 그의 말씀과 영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모으며 흩어지게 하고, 보호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칼빈은 교황주의 안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만이 성서의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이며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서의 유형적인 해석을 통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일을 시도하였다. 그는 해석학을 의무로 하는 것 대신에 ‘오직 성서로만’(sola scriptura)의 원리를 고려하면서 성서의 핵심을 찾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로부터 교회는

필요가 있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구속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예정 작정은 구원론 끝(정확히 말하면 3권 ‘최후의 부활’ 바로 앞에)에 놓인다. 그 전개 순서는 역사적 혹은 시간적 순서이며, 논리적 순서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락전예정론은 논리적 순서의 처음, 곧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강조점을 둔 것이며, 타락후예정론⁷¹⁾은 역사적 순서의 처음, 곧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상태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은 칼빈의 예정론에서 그 어느 한 쪽만 강조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측면이 경시된 것도 아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 논점들의 관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어느 한 쪽 없이는 다른 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밀접하여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칼빈의 눈으로 볼 때 타락전예정론과 타락후예정론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 혹은 강조점의 차이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타락전·타락후예정론 논쟁의 칼빈적 뿌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차이점들이 칼빈의 예정론 안에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71. 칼빈의 타락후예정론적 개념은 성경의 조절 기능과 관련시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선택과 성경의 조절 기능을 다음과 같이 연관시키고 있다. “성경은 가끔, 우리의 이해력에 맞추어, 하나님의 선택을 이 부르심과 칭의로서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만 한다. 그 이유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그의 능력을 보여 주신 그런 예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수에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롬 9:11, 25-26, 10:20, 11:7, 24, 28; 호 2:23).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불변적인 섭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롬 8:1, 14). Inst.(1536), p. 59(CO 1, 73).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물론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서로만’의 원리가 일관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으나¹⁾ 그가 말하는 개혁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성서적인 척도를 가지고 개신되어야 하는 교회에게 일차적으로 유효하며,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도 유효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가운데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

칼빈이 가지는 참다운 교회에 대한 관심은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개혁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의 통일성을 포함하며 교회 안에서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증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구조는 교회 본질적인 섬김의 기능을 유지 수행하도록 개신되어야만 한다. 그때의 관건은 신앙인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과 활동에 대한 형태가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의미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칼빈에 의해 인식된 이러한 과제들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회복을 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함께 얹혀 사는 화해된 인간의 종말론적인 이해에 상응하는 것으로써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신앙고백과 예전의 개혁과 함께 역시 교회법령의 개혁을 수행하였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다양한 직무들을 성서에서 발견해 내어 교회의 개혁과 함께 사회적인 질서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칼빈의 교회법령을 통한 교회와 사회개혁은 그에게서 양태화된 디아코니 활동이다.

*디아코니(Diakonie)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하여는 필자의 졸고 “교회와 섬김 : 교회의 본질로서 섬김”(『기독교사상』, 1999년 9월호, S. 16-3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G. Ebeling, Art. “Hermeneutik,” in : ³RGG 3, 1952, S. 253.
2. H. A. Oberman, *Die Kirche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Neukirchen-Vluyn ³1988, S. 249.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디아코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칼빈의 디아코니는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의 디아코니 활동을 비롯한 개혁자들—특히 마틴 부처(M. Bucer)—의 디아코니와, 조금 더 멀리는 중세 시대의 사랑의 실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없이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본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칼빈의 디아코니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칼빈의 디아코니를 위한 법령제정의 전조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의식중심주의에 대한 개혁자들의 비판은 영혼만을 달래 주는 미사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였고, 그 반면에 노동, 빙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개신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각각 시대적인 교회의 새로운 법령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1522년 1월 24일에 멜랑히톤(Ph. Melanchthon)은³⁾ 비텐베르크(Wittenberg) 시의 의회원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이 도시를 위한 하나님의 법령을 완성하였다. 이 법령은 예배와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위한 내용들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이 도시 운동을 위한 개혁자의 분명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비텐베르크 시의 이러한 새로운 법령은 개신교적으로 숙고되어진 서민사회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다.⁴⁾ 이와 함께 1522년에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뉴른베르크(Nürnberg), 알텐부르크(Altenburg)에서 그리고 1523년에는 키칭엔(Kitzingen), 슈트라스부르크(Straßburg), 브레슬라우(Breslau) 그리고 레겐스부르크(Re-

3. 1530년에 그가 작성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Confessio Augustana*)에는 여러 조항에서(특히 7, 8조항) 디아코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4. 이 법령은 모두 17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배와 사회개혁과 경제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H. Lietzmann(Hg.), *Die Wittenberger(1522) und Leisniger(1523) Kastenordnung*, KIT 21, 1907, S. 4-6.

gensburg)에서도 각각 법령이 제정되었다. 1523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법령(혹은 라이스니거(Leisniger) 법령이라고도 함.)에 대한 공식적인 집행에서부터 이자증식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린 소년들을 양육하는 학교와 가난한 노인들과 어린이들, 이방인들을 돋는 디아코니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전체 현금함의 용도에 관해 규정해 놓은 이 법령집의 서문을 작성하였다.⁵⁾ 루터는 신앙과 행함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⁶⁾

1526년에 슈파이어(Speyer) 제국의 날 이후 개신교 제국들에게 개혁에 대한 법적인 실행력이 주어졌고 이를 위해 기획된 교회법령들은 예배와 사회개혁, 즉 예전과 디아코니를 포함하였다. 1529년에 부겐하겐(J. Bugenhagen)이⁷⁾ 함부르크(Hamburg) 교회법령을 작성하는데 이 법령은 학문으

5. H. Lietzmann(Hg.), *Die Wittenberger und Leisniger Kastenordnung*, 2Aufl., Berlin 1935, S. 1-24.

6. 루터는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 교회가 개혁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올바른 신앙은 결국 좋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었다. 그는 1535년 9월 11일에 로마서 3:28에 대한 신앙에 관하여(de fide)란 그의 첫 번째 논박에서 모두 71조항으로 쓰고 있다. 그는 1538년 아래로 나오는 그의 출판물들 속에서 로마서 3:28에 대한 신앙론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일련의 큰 제목으로 종합하고 있다. 루터는 신앙에 관하여(de fide)란 머리제목하에 25-28제제 속에서는 오직 신앙만이 의롭게 만든다고 쓰고 있다. 즉, 제25제제에서는 우리를 올법과 행함 없이도 의롭게 만드는 진정한 신앙에 대하여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궁зал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곧바로 이어지는 테제 29-39에서 보여 주고 있다. 즉, 루터는 제29제제에서 행함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가 공로 없이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M. Luther, “De fide”, in : WA, 39, 1, 46 u. 44f). 우리가 이 테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강조점인데 하나는 진정한 칭의는 행함에 앞서는 것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행함의 주체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1522년에 ‘좋은 행함에 대한 설교’에서 말하기를 좋은 행함이란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1519년 “이자증식에 대한 설교”에서 신앙인의 행할 바를 말하였으며, 1524년에는 상행위와 이자증식 및 고리대금업에 대하여 신앙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썼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루터에게 나타난 신앙과 행함(혹은 복음과 올법)을 서로 나누어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그는 계속하여 Braunschweig(1528), Pommern(1534), Dänemark(1537), Holstein(1542),

로서의 신학 교육과 사회적인 돌봄으로서의 구호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츠팅글리(H. Zwingli)가 활동한 취리히(Zürich)에서 이미 1520년에 구제에 관한 추천서가 문서화되었고, 그 이후 구제에 대한 이론적인 숙고들이 1521년과 1522년에까지 계속 실천으로써 열매를 맺었다. 그는 1525년 1월 5일에 구제에 적합한 법조항을 만들었다.⁸⁾ 그리고 1524년에 쌔 갈렌(St. Gallen)과 샤프하우젠(Schaffhausen)에서,⁹⁾ 1526년에 바젤(Basel)에서,¹⁰⁾ 1528년에는 무스하펜(Mushafen)에서 만든 법령이 베른(Bern)으로 이어졌다.

마틴 부처는 츠팅글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등을 포함한 디아코니를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 본다. 그는 1543년 이후로 말씀선포 그리고 성례 전과 함께 행함을 통한 복음의 고백으로서의 디아코니를 참다운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 나란히 놓았다.¹¹⁾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고유한 법령과 기관들을 통하여 독립적인 신앙과 생활공동체로서 양태화되기를 바랐고,

Braunschweig-Wolfenbüttel(1543) 그리고 Hildesheim(1544)을 위한 교회법령들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은 대체로 루터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8. 이 구제법은 취리히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적인 전거를 형성하였는데 대다수의 어린이, 노인, 병든 자, 혼약자, 여행자, 한센병자, 성병환자 등을 돋는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구제법은 원칙적으로 도시의 시민들과 그 도시농촌의 시민들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는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청의 4명의 회원에게 위임하였고 그 일을 지도하는 자로서 정규직 상관 공무원 한 명에게 위탁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일의 수행을 위한 교회의 공식적인 집사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숙고도 하지 않았다. 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in : H. Krimm(Hg.), *Das diakonische Amt der Kirche*, Stuttgart 1953, S. 194f.

9. 이 도시의 구제에 관한 법은 St. Gallen의 구제법을 그 발판으로 삼고 있다.

10. 이 당시 바젤의 가난한 자들을 돋는 법에 대한 규정은 취리히 법령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1529년에서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개신교성이 강한 바젤의 고유한 법령이 확정되었다.

11. M. Bucer, *Bestendige Verantwortung*, S. 120. 재인용, 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201.

그래서 그는 사랑의 돋는 활동을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로서 인식하였다.

부처는 교회의 목사들과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직무를 맡은 세 명의 형제들의 위임을 받아 1532년 11월 30일에 슈트라스부르크 대의회에 “사도 시대의 소명”이란 제목 아래 모두 6개 조항으로 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조항은 교회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¹²⁾

그는 1543년에 멜랑히톤과 함께 쾰른(Köln) 대주교의 많은 회고들을 기초로 쾰른의 개혁사상¹³⁾을 재작업하여 그것을 교회의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일에 전거로 사용하였으며, 그는 참다운 교회의 디아코니를 위해 공적인 전담자를 세웠다. 이러한 직무를 맡은 자가 바로 집사들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는 교회의 여성회중들이 관여할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고대 기독교공동체 안에서 과부들과 처녀들이 행한 디아코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기 시대를 여성안수집사(Diakonissen)¹⁴⁾ 시대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지위나 계급적 그리고 성적인 차별이 없다고 보았다.

12. 비교 : 부처가 1523년 5월에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난민들을 만났을 때에 그 도시는 그해 8월 4일에 전반적인 구제법규를 공포하였고 개신교적인 정서를 가진 Dr. Lukas Hackfurt를 이 일을 전담하는 자로 세웠다. 부처는 Ulm, Memmingen, Biberach와 같은 도시에서 개혁 수행을 위한 상담을 해 주기도 하였다(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197).

13. 중세 가톨릭의 교권주의의 상황 속에서 Hermann von Wied 대주교는 직제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별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그는 비신학자가 교리를 강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부유한 수도승들의 봉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비교 : 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197 ; 201).

14. 현재 독일어로 ‘디아코니센’(Diakonissen)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은 우리말로는 여성 안수집사들로 번역되어질 수 있었다. 이들은 디아코니를 위해 안수를 받고 임직되며 결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처 당시에 그가 여성들을 디아코니센으로서 교회공동체의 선택을 받아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획을 하였다면, 그들은 남성집사들이 거치는 모든 의식을 똑같이 거행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부처에게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교회의 소유를 집사가에 달린 자의 재산으로 인식하여 교회의 재산은 환원되어져야 하며, 정확한 교회의 결정에 상응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¹⁵⁾ 그의 이러한 일관된 입장은 1549년에 그가 슈트라스부르크를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서도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등을 돌보는 교회공동체의 본질적인 삶을 구체화하였으며, 교회 안에 집사 직무를 필수적인 직제 가운데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¹⁶⁾ 부처는 슈트라스부르크의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칼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으며, 교회의 디아코니에 대한 그의 입장은 성서에 그 근거를 가졌고 고대 교부들과 법령들에 있어서도 칼빈처럼 잘 알고 있었다.

3.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디아코니적인 본질

칼빈은 교회를 마치 머리에 의존하는 하나의 신체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로 표시하였다(엡 4:15-16). 그는 신약성서의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로부터 출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in Christo-Sein)의 교리를 구약성서적인 교회론과 관련하여 발전시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러한 선택은 무오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진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로 불리운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서로의 섬김 속에서 세워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식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들이 서로 묶여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스

15. 재인용, 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200.

16. 비교 : 부처가 영국으로 건너간 이후 그는 그 지역 교회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교회의 재산관리를 위한 집사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특별한 공무원이 그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203).

도 안에서 신앙인의 공동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를 섬기심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순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어 주는 성령의 끈이다. 인간의 편으로부터 그것은 신앙인바, 이 신앙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칼빈은 교회를 위한 신앙인의 섬김의 원리를 바울에게서 발견한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인간들에 의한 섬김은 신앙인들을 하나의 몸으로 묶는 가장 중요한 끈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그는 섬기는 자들에게 직무를 위임하고 섬김을 이루어 가는 은총을 보장하며, 교회에 대한 그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어 열매 맺는 작용을 정확한 방법으로 현재화하는 것을 보여 준다.¹⁷⁾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총의 선물을 통하여 그들 서로에게 단지 섬김으로 수행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칼빈은 말씀과 기도가 없고 성만찬의 나눔이 없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랑의 활동이 없는 교회의 어떠한 집회도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절실히 하였다.¹⁸⁾ 그는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실천을 교회의 직무적인 디아코니의 어떠한 권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회중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였다. 신앙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회피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도와야만 한다. 칼빈은 그들이 신앙인의 섬김의 선행

17.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ICR) IV 3, 2, übersetz. u. bearb., O. Weber, Neukirchen-Vluyn 1984.

18. ICR IV 17, 44.

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⁹⁾

이러한 섬김의 의무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디아코니적인 본질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섬김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²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섬기는 자로 우리를 구속한 것처럼 신앙인의 이러한 섬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 공덕사상에 의한 칭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음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²¹⁾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섬김은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에게 나타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디아코니적인 존재인 것이다.

4. 교회의 디아코니적 구조

칼빈은 사랑 안에서 섬기는 교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교회란 우리의 주님이 그의 모든 보화를 넘겨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며 교회는 그 보화를 보존하며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그 보화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²²⁾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 교회(*die Mutter Kirche*)가 곧 본질적으로 섬기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다. 이때에 칼빈은 보이는 교회의 섬기는 구조에 대한 사고를 어머니 교회에 대한 표현방법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19. ICR III 7, 6.

20. ICR IV 3, 10 ; 3, 11.

21. J. Calvin,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CO) 53, 417, ed., W. Baum u.a., 58 Bde, Braunschweig 1863-1900.

22. CO 1, 539.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디아코니적인 구조는 교회가 은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는 어떠한 우선 순위도 용납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의 동료적인 지체들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의 구체적인 구조를 수립하는 일이 불가피하며,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그의 디아코니적인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구원을 수행하는 선택의 장소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디아코니적인 교회로서 어머니성을 가지는 교회는 모든 신앙인 각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인간에 대한 교회의 섬김을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교회의 이 세상적인 섬김의 일을 함께함으로써 실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성령께서 신앙인에게 그 섬김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령을 통한 교회의 섬김 속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는 인간과 함께 맺어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맺어진 영향력은 신적인 권리로부터 나온 감독의 우선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이나믹한 동등성의 교회공동체를 이루도록 한다.²³⁾

이러한 성령의 다이나믹성은 다양성 가운데 동등한 비중과 조화를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속의 형제자매 사랑의 공동체성 안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다양한 은사들에 근거하는 교회의 섬기는 직무들이 하나님의 동등한 비중을 갖도록 하는 일을 시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직무는 만인사제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 교회적인 섬김의 다양한 형태들(4직무)을 철저하게 섬김의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섬김은 다양성 속에서 근본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23. ICR IV 7, 23f.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서 교회란 섬김의 직무들 간에 협동의 길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은 보다 교회의 위계질서 구축에 상응하는 수직구조의 원리수립을 고수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섬김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며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디아코니는 수직적 위계질서로써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서로 함께함에 근거하는 동등성의 구조를 가지는바, 그것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속에 뿐리를 내리고 있다.²⁴⁾ 그는 교회의 다양한 섬김의 일들을 에베소서 4:11~13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인의 공동체성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섬김을 통한 동등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²⁵⁾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직무가 섬김을 통한 은사들의 동등한 비중의 활용으로 이해될 때에 교회의 구조는 그 의미에 있어서 디아코니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5. 교회의 삶의 형태로서 디아코니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회중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성도들의 공동체성(*communicatio sanctorum*)으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과 맺어진 신앙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신앙인들 서로가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다. 이는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삶으로써 수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삶은 서로서로 상호적으로 보충되어지는 것이다. 상호적으로 보충되어지는 삶은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채워 가는 상호 간의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다.

제네바에서 교회의 삶에 대한 칼빈의 경험은 1541년에 제정된 「제네바

24. ICR IV 6, 9.

25. ICR IV 6, 7.

교회법령」(*die Genfer Kirchenordnung ; Ordonnances Ecclésiastiques*)에 기초가 되었으며²⁶⁾ 이미 그 영향으로 1543년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그는 불가시적인 연합(communio)과 가시적인 공동체성(communicatio)의 유효한 동등비중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²⁷⁾ 그에 의하면 교회의 전적인 영적 통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래서 신앙의 합의와 형제들의 일치단결을 위해 잘 돌보고 보존하는 것이다.²⁸⁾ 이러한 것은 단지 법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법령은 교회 안에서 각각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 주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현재화되도록 한다.

칼빈은 1541년의 제네바 교회법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하신 직무의 4가지 법령을 제시하고 있다.²⁹⁾ 그는 성서로부터 4직무—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도출해 낸다. 4직무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에게 봉사하고 그의 고유한 구원을 신뢰하도록 돋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집사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집사들은 그들의 직무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의 육신적인 고통과 가난함을 궁휼히 여겼고 우리의 이 땅 위의 어려움들을 보살펴 준 것을 ‘실천적으로’ 증거해야 한다.”³⁰⁾ 그래서 칼빈은 교회공동체를 하나님의 기능공동체로 여겼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회법령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서 보이는 교회법령은 그것이 개별적으로는 모든 자유로움을

26. 교회사가 Heiko A. Oberman에 의하면 1541년 제네바 법령은 칼빈이 슈트라스부르크(Straßburg)로부터 제네바로 돌아온 직후 작성하였으며, 1541년 11월 20일에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이후 1561년에 나온 제네바 법령에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H. A. Oberman, *Die Kirche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3. verbesserte Auflage, Neukirchen-Vluyn, 1988, S. 246).

27. ICR IV 1, 7.

28. CO 5, 39.

29. J. Calvin, *Ioannis Calvinii Opera Selecta*(=OS) 2, 328, hg.v. P. Barth/W. Niesel, 5 Bde, München 1926–1962.

30. OS 5, 50.

가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삶의 형태에 대한 하나님의 임무규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법령은 교회공동체를 하나의 기능공동체로서 존속하도록 유지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능과 마찬가지로 임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셨는가와 같은 구원의 계시로부터 결과되는 것이다. 그리므로 그러한 임무들은 신적이고 영적인 권리들이다.³¹⁾ 이렇듯 신적이고 영적인 권리로서의 임무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교회의 실천적인 삶으로의 요청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디아코니적인 삶의 양태화에 대한 요청인 것이다.

물론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시민적인 법규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적이고 외적인 (internum und externum) 것의 대립명제가 아니라 숨겨져 있고 이미 명시된 것들이다. 이러한 교회공동체의 삶의 형태는 그에 의하면 역시 정치적인 관계의 양태에 있어서도 신앙인들에 의해 기도로써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양태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그의 교회의 디아코니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사고를 교회법령 내지 교회치리 속에서 수립하고 있다.³²⁾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강령원리들은 일반적인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그 강령들을 통하여 사회는 평화와 일치단결 그리고 상호 간의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속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해 예견된 공적인 권력(정치)은 공동의 평화를 촉진시키며 일치단결을 도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공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심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인간성을 귀하 여기는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칼빈에 의하면 결국 이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들이다.³³⁾

31. ICR IV 10, 18.

32. ICR IV 11, 2–3.

33. ICR IV 10, 27.

6. 교회의 섬김 직무

칼빈은 성서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신의 계시를 힘입어 신앙인이 가장 높으신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교회를 양태화할 수 있는지와, 교회의 고유한 책임 가운데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은사와 위탁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를 중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를 필요로 한다. 즉, 하나님의 교회공동체는 지도하고 가르치고 사랑의 활동을 돋는 다양한 종류의 직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직무들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주님 홀로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써 열어 보이기 위해 가시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인간의 종사와 동시에 인간의 대표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하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인간들의 복음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의 감추어진 뜻을 알리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겸손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인 것이다.”³⁴⁾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다양한 섬김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숨겨진 소명의 수행이다. 이러한 숨겨진 소명은 우리 마음의 선한 중언으로, 우리는 교만이나 소유욕이나 어떠한 다른 욕구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진솔한 하나님 경외로부터 교회의 간신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³⁵⁾ 그는 교회의 직무가 교회의 공식적인 법령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4. ICR IV 3, 1.

35. ICR IV 3, 11.

칼빈의 교회의 4직무법령은 주님이 그의 교회의 지도력으로써 세운 것인 바 목사,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³⁶⁾ 이것은 이미 부처에게서 옛보이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가 슈트라스부르크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교회의 법규 가운데 4직무가 기술되어 있었다.³⁷⁾ 부처는 1536년에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서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섬김의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교회의 섬김적 수행에 대하여는 교사(docteurs), 목사(pasteurs), 장로(gouvernateurs), 그리고 집사(diacres)로 제정하였다. 그들은 교회공동체에게 가능한 한 최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조직하는 일의 과제를 가진 자들이다.”³⁸⁾ 이처럼 칼빈도 교회의 4직무를 수립하였고 그 각각의 직무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서로 함께 일하는 것으로 보았다.

비록 칼빈에게 있어서 이러한 직무의 숫자가 그의 여러 「기독교강요」 출판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³⁹⁾ 그는 그 모든 직무들을 모두 신적인 제정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이러한 교회의 직무들을 신적인 기구(divinitus institutus)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문되어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성령으로서 선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물은 섬김의 일이 없이는 몰락하는 것이다.⁴⁰⁾ 여기에 칼빈의 분명한 통찰이 있는바, 보이는 지역 교회의 지도력은 전반적인 섬김의 결과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관건은 직무의 숫자가 아니라 이러한 직무를

36. W. Bernoulli, *Calvin und Amt der Diakone*, in : *Reformatio* 8, 1959, S. 329.

37. 부처에게 있어서 4직무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의 두 직무를 말하기도 하였다(M. Bucer, *Ein Summarischer Vergriff*, S. 19 ; 재인용, 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20ff).

38. 재인용, J.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Organimusgedankens*, *Untersuchung zur Deutschen Staats- und Rechtsgeschichte* 147, Breslau 1937, S. 460f.

39. 칼빈은 1559년에 출판된 그의 「기독교강요」에서는 교회의 4직무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다른 작품에서 교회의 3직무를 자주 말하고 있기도 하다.

40. ICR IV 3, 13.

통하여 수행되는 과제 자체들로서의 기능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직무들은 신적인 제정에 속하기 때문이다.⁴¹⁾ 칼빈의 신적인 제정으로서 직무에 대한 엄격한 주장은 설득력 있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적인 직무가 사도적 직무의 후예로서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직무는 교회의 하나의 구성적인 요소이며 또한 네 가지 형태로써 실천적으로 나타내지는 교회의 본래적인 위임사항이다.

7. 집사의 직무

칼빈은 1536년에 나온 그의 초판 「기독교강요」에서 집사의 선출과 그들의 장립과 그들의 과제들에 대하여 쓰고 있다. 그는 집사의 기원을 사도행전 6:1~6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그 당시 교회공동체가 집사라고 불리던 교회의 정해진 남성들이나 혹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수행한 과부들로 불리워진 여성들을 제시하고 있다.⁴²⁾ 칼빈은 1543년 「기독교강요」에서 집사직에 대하여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집사직에 대한 직무규정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원시 기독교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도들의 모범상으로 소급한다.⁴³⁾ 1559년에 최종으로 나온 「기독교강요」에서 그는 교회의 4직무—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요구하며 고대 교회 안에서 집사들의 지위에 대하여 길게 서술하고 있다.⁴⁴⁾ 1561년에 나온 「교회법령」(*Ordonnances Ecclésiastiques*)에서는 제네바 시 안에서 집사직에 대한 보편적인 요청이 집사직을 최종적으로 새롭게 확정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설교되어지는지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정된 성만찬이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되는가에 따라 그 교회를 인정한다. 이러한 그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1561년의 교회법령은 제54

41. W. Niesel, *Theologie Calvins*, München 1957, S. 210.

42. 빌 1, 1; 딤전 5, 9-15.

43. OS 5, 465.

44. OS 5, 61f.

조에서 집사직에 대하여 재평가한다. 즉, 성만찬의 분찬은 장로들 혹은 집사들이 설교하는 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고 있다.⁴⁵⁾

칼빈은 집사의 선출을 디모데전서 3:8~13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집사의 선출을 장로 선출 때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보고 있다.⁴⁶⁾ 그에 의하면 집사는 그들에게 부과되어진 고통을 짊어져야 하기에 무능해서는 안 되며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서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집사직을 지원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도행전 6:3에 나타난 것과 같다. 그는 집사들이 교회공동체 투표에 의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식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⁷⁾

칼빈은 집사직을 현정받은 지위로 규정하였으며 집사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사람들로 규정하였다.⁴⁸⁾ 집사들은 기도와 손 얹음을 통하여 안수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손 얹음 이외에 어떤 다른 예식도 원시 기독교 사도들은 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안수는 목사에 대한 안수와 마찬가지로 집사들 각각 개별자에게 물어진다.⁴⁹⁾ 그는 일곱 명의 집사에 대한 안수를 진정한 예전적인 기능으로써 해석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집사들은 단순히 평신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성만찬을 베푸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집사들은 정확한 법규에 따라 정중하게 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성만찬의 집행에 있어서 목사의 협력자로서 임을 제공해야 한다.⁵⁰⁾

45. 이 법령 안에 예배를 위한 교회조직에 대한 조항 가운데 성만찬과 관련하여 집사직무를 정리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설교자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빵을 나눠 주어야 하며 설교자와 함께 장로 혹은 집사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근거에서 많은 숫자의 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Ordonnances Ecclésiastiques*=OE) Art. 54, übersetz., W. Bernoulli, *Calvin und Amt der Diakone*, in : *Reformatio* 8, 1959, S. 331-334).

46. 만일 신앙인들이 장로를 세운다면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써 훈련하며 선거 시에는 진실해야 한다(ICR IV 3, 12).

47. ICR IV 3, 9.

48. W. Bernoulli, *Calvin und das Amt der Diakone*, S. 331.

49. ICR IV 3, 16.

칼빈은 집사직을 하나의 독립된 교회의 직무로서 인정한다. 그는 집사직을 다른 직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으로 그 하위에 놓고 있지 않으며 그것들과 동등하게 위치시켰다. 그는 집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서 승인하였다. 칼빈은 디모데전서 3:9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집사들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개인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 교회의 회중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해야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는 집사 직무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전제하는바, 집사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일을 무보수 또는 부수적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삶의 직업으로서 그리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칼빈은 이러한 집사 직무를 결코 다른 직무들 아래로 그 서열을 정해 놓지 않았다.

칼빈은 로마서 12:8에서 집사들에게 주어진 훈시로 보고 있는데⁵¹⁾ 그는 그것으로부터 두 종류의 집사직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 하나는 구제하는 일을 맡은 집사이고 다른 하나는 병든 자를 위로하는 일을 맡은 집사이다.⁵²⁾ 고대 교회 안에도 항상 두 종류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매일의 구제와 그들의 재산, 연금문제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자와, 다른 하나는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간호하며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다.⁵³⁾ 물론 우리는 칼빈이 이러한 집사직의 특별한 두 가지 일에 대한 위임을 로마서 12:8의 훈시에로 정확하게 소급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확정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성서에 근거를 가지는 집사직에 있어서 칼빈은 원시 기독교 여성들이 집사직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두 종류의 집사

50. 재인용, J.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S. 469.

51. 롬 12:8 :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개역 개정판). 비교, 담전 5, 10, 행 6, 1-6.

52. ICR IV 3, 9.

53. 재인용, J.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S. 469.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돋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일에 임직된 집사들은 디모데전서 5:10에 언급된 과부들로서 여성 집사들이었다. 이 성서 본문에 나타난 과부들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돋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떠한 공식적인 직무도 가질 수 없었다. 물론 칼빈이 이 성서 본문에서 언급된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과부들을 고대 동방 교회의 디아코니센들과 동등하게 자리매김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성서가 그에 대한 자극을 주지 않았다면 프로테스탄티즘,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직무제정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가가 물음으로 남는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칼빈이 그의 여성 직무제정의 근거를 성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칼빈의 이러한 자극은 독일의 라인 하류지역(Niederrhein)과 네덜란드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헐리드너(Th. Fliedner)⁵⁴⁾에게 간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칼빈은 집사들이 그들의 책무를 단지 기계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 그것을 꾸짖었다. 만일 병든 자를 돌보는 자와 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복음의 영으로부터 벗나가 있을 때라든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같다는 것을 잊고 이러한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과 같다는 것을 떼어 놓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항상 분명하

54. Th. Fliedner(1800-1864)는 독일에 있어서 최초로 여성 안수집사(디아코니센 : Diakonissen)를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킨 사람이다. 그는 이 직무를 직접적으로는 성서의 사도 시대의 직무에로 소급시켰다. 그는 1836년에 Kaiserwerth 지역에 최초로 어머니의 집(Mutterhaus)을 세워 디아코니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훈련시켰으며 그들의 노후생활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1861년 아래로 Kaiserwerth에서 독일 전역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소속된 여성 안수집사들의 전체대회를 가졌는데, 이 첫 번째 전체모임에 27개의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모두 1197명(디아코니센+예비 디아코니센)의 자매들이 참석하였다(이 자료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개신교 사회봉사국의 자료 보존실 가운데 Th. Flieder의 자료 보존실에서 얻은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J. Schmidt, *Die 'Diakonissenfrage' im Deutschen Kaiserreich*, in : Th. Strohm/J. Thierfelder(Hg.), *Diakonie im Deutschen Kaiserreich*(1871-1918), Heidelberg 1995, S. 309f).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개신교의 기독교 사회복지 시설(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시설)이 있는 곳에는 대체로 그 시설 중심에 Mutterhaus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게 말하였는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규 가운데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선포와 섬김의 지위를 넘겨주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대한 그의 설교에서 칼빈은 집사직을 거룩한 법규란 의미에서 이 세상적인 직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빈의 고대 교회 속에서의 집사직무와 사랑의 활동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집사직무를 사제직으로 가는 단순한 전단계로 왜곡시킨 것을 날카롭게 거부함과 동시에, 그 직무를 다른 직무와 동등하게 위치시킴으로써 개신교에 설득력을 주었던 것이다.

8. 교회법령과 칼빈의 디아코니

1541년에 제정된 「제네바 법령」은 그 모든 개개의 조항 안에 칼빈이 이론적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모형들이 들어 있지 않다. 나아가 칼빈의 교회법령에 대한 사고들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한 그의 작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개혁의 제2세대의 사람으로서 부처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교회법령의 내용과, 그의 슈트라스부르크 교회공동체 가운데 있는 많은 자료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⁵⁾ 1541년 「교회법령」(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은 부처의 슈트라스부르크의 법령의 영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 교회법령은 개개의 교회공동체의 책임 속에서 전적인 신뢰를 받았다. 제네바 시는 칼빈의 열망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고유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의 디아코니는 통일적으로 그리고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었다. 제네바 시에서는 디아코니에 대한 규정은 교회법령의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교회법령에는 아무것도 영구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양태로 정해졌다.⁵⁶⁾ 여기

55. J. Weerda, *Ordnung zur Lehre, zur Theologie der Kirchenordnung bei Calvin*, in: J. Moltmann(Hg.), *Calvin-Studien*, Neukirchener 1959, S. 147.

에 이미 교회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로서 기구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확신이 깃들어 있다.

칼빈은 부처에게 발판을 두고 있는 집사직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제네바로부터 추방당한 후 1538년 9월 아래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와 일했으며 그에게로부터 배웠다. 그가 다시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되돌아 왔을 때에 그는 그해 11월 20일에 이미 제네바 교회에서 비로소 실제로 그의 개혁적인 관심들을 관철하였고, 그들에게 폭발적인 힘을 주는 그 유명한 교회법령을 관철하였다. 그러나 그는 목사직을 교회의 유일한 직무로 지키고 있는 파렐(Farel)에 대항하여 그것을 강행시키지 않았다. 1535년에 파렐의 관점에서의 제네바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 대한 개혁은 하나의 현저한 발전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칼빈이 바랐던 것과 같은 결정적인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칼빈은 1541년 교회법령을 골자로 하여 1561년 11월 13일에 새로운 교회법령을 확정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집사직에 대한 보편적인 요청이 최종적으로 새롭게 확정되었다. 거기에서 칼빈은 만일 모든 기독교 도시들이 좋은 결과를 이룩하려면 제네바의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도시들이 장래에 무엇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561년에 나온 이 교회법령의 교정본은 칼빈이 여기에서 단지 극소수 조항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당시 제네바 도시는 점점 더 하나의 고유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그래서 디아코니는 통일적이고도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졌다. 칼빈에게 있어서 디아코니와 관련하여 고대 교회로의 소급은 두 종류의 집사를 생각하게 하였다.⁵⁷⁾ 그런데 그에

56. CO 49, 473.

57. 이 법령 제39조에서는 두 종류의 집사의 일에 대하여 고대 교회의 전통을 언급한다. 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돋는 일에 대한 방법과 수단들을 관장하고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다른 하나는 병든 자를 돌보고 위로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이러한 법령은 모든 기독교 도시들이 전해 받아야만 한다

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돌봄이 병든 자와 위기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4사람의 행정관리자가 재정을 모으고 관리하였고⁵⁸⁾ 교회의 복지시설인 구빈원(Spital)⁵⁹⁾에서 일하는 자들은 병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주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장로나 고위 행정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선출되어야만 하였고 바울이 전한 디모데전서 3장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했다.⁶⁰⁾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전체가 함께 결정하였고 아주 시급한 사안에 있어서는 비판료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참석과 함께 위의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었다.⁶¹⁾ 모든 돌보는 일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큰 비용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 이외에도 재단의 수입과 교회재산으로 지불되어져야만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의 총체성과 후원자들의 신뢰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득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충실한 임무 수행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OE, Art. 39).

58. 그 당시 확장된 디아코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구제현금, 자발적인 보조금, 교회가 운영하는 재단들의 수입과 교회 재산을 통하여 지출되었다. 지출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법령 제4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관리하는 숫자는 모두 4명으로서 수입이 모자라거나 혹은 하나의 예외적인 위급한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최고의결기관은 이를 위한 충분한 수단을 창출해 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특히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들어오는 수입을 책임져야만 하였는데 이는 생활필수품을 적기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물질을 헌납한 자들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OE, Art. 40).
59. 현대식 병원의 전신으로서 대체로 그 당시 병든 자(순례자 포함)가 죽기 전까지 간호받고 돌봄을 받는 시설이었다. 나아가 이곳에서는 노인, 과부, 고아들과 위기에 처한 자들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60. 제41조는 규정하기를 “병자들을 간호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은 장로의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되어야만 한다. 그때에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전 3장에서 집사에 대하여 말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OE, Art. 41).
61. 이 법령 제42조에서는 관리자들의 업무와 능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유예가 위험 시 되는 급박한 경우와 엄청난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큰 어려움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네 명이 모두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한두 명이 도와주는 일을 결정할 수 있다(OE, Art. 42).

재정수단을 조달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관리자는 역시 구빈원(Spital)을 이끄는 임무도 가지는데 그가 전력을 다해 그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료를 받았다.⁶²⁾ 구빈원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곳에 사는 자들에게 정중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삶으로 인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빈원의 집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⁶³⁾ 이러한 집들에 속하는 것은 구빈원, 페스트 병동, 그리고 불쌍한 자들이 거하는 숙소이다. 칼빈은 이미 1537년 10월 30일에 구빈원의 부족한 장비들에 대하여 항거하기도 하였다.⁶⁴⁾

교회법령 47조에서는 이미 신뢰뿐만 아니라 감독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칼빈은 그들의 활동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일(Besichtigung im Hospital)을 제정하였다. 고위 행정관리자들(Seigneurs Syndics)과 설교자와 장로들은 이 기관을 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⁶⁵⁾ 즉, 매 3개월마다 몇몇 봉사자와 장로들이 고위 행정관리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병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논의되었고 페스트 병자를 위한 특별한 병원시설 수립과 지속적인 개인별 의사의 도움을 받는 과제들은 모두 칼빈의 인애사상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다.⁶⁶⁾

가난한 자와 노약자를 위해서는 시내에서도 활동하는 특별한 의사와 비전문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사를 두어 일하도록 해야만 하였다.⁶⁷⁾ 교회

62. 네 명의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은 모든 소득에 대한 수납인으로서 일하며 공식적인 구빈원도 이끌어야 하는데, 그는 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봉급을 받아야만 한다(OE, Art. 39).

63. 하나님의 현정하신 집들을 관리하는 자와 그 안에서 간병하는 자들은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삶으로 이끄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OE, Art. 46).

64. 비교, 이에 대하여는 W. Bernoulli는 안토니 프로몽(Antoine Froments)의 보고를 빌리고 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칼빈은 가난한 자들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져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1564년 4월 28일자 목사 고별연설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개혁 이란 결코 어떠한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만으로는 정확한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재인용, W. Bernoulli, *Calvin und das Amt der Diakone*, in : *Reformatio* 8, 1959, S. 330).

65. OE, Art. 47 ; 비교, W. Bernoulli, *Calvin und das Amt der Diakone*, S. 332.

66. CO 10, 103.

법령에서는 페스트를 하나님의 채찍의 길로 이해하였고, 그 병이 든 자를 위해 특별한 병동을 세워서 그 안에서 그들은 신앙적인 희생으로 간호되며 돌보아졌다.⁶⁸⁾

1561년 11월 13일에 나온 교회법령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한 명의 교사를 준비해 놓고, 그가 어린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그들은 처음 기초 과정에서는 신앙적 교리를 배웠다. 불쌍한 나그네들이 거하는 숙소(l'hôspital des passants)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행자들을 수용해야만 하였다.⁶⁹⁾ 칼빈은 역시 여전에도 두 명의 집사가 시청의 사무원과 함께 집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상주하여 일하도록 하였다.

칼빈은 구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령을 통해 통일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에 있어서는 고위 행정관리자들의 의결에 따라 몇몇 공무원에게 그 일을 맡겼다.⁷⁰⁾ 이 당시 제네바 시에서 볼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그 시대의 중언자로서 전 교황청의 수도사였던 베르게리오(P. P. Vergerio)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제네바 시 교회에는 집사직무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1556년 이래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현저하게 더 나아졌다. 그가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구걸하는 자도 구제금을 거두는 자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그가 구빈원을 방문했을 때에 비로소 그 수수께끼가 풀리었다. 그는 여기에서 비참한 자들은 갖가지의 시설들을 통해 신앙인의 사랑을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한 형제애적인 정서로부터 나오는 신앙인들의 풍부한 도움 자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⁷¹⁾ 칼빈의 후계자인

67. OE, Art. 48.

68. OE, Art. 49.

69. 도움이 필요한 떠돌아다니는 유랑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유랑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의 관리자의 소개에 의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OE, Art. 45).

70. 구걸금지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할 사항이었다. 교회 입구에서 구걸하는 자들이 배회할 때에 이에 대한 통제의 일을 맡은 이들은 그들을 교회 입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만 한다. 저항하는 자들은 고위 행정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끌고 와야만 한다(OE, Art. 50).

테오도르 베자(Th. de Beza)는 1576년에 교회 문전에서 구걸하는 자들에 대한 칼빈의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척도를 후퇴시켜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태협을 하였다.

칼빈은 구걸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적인 도움의 기준을 요구하였고, 이와 함께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궤徊하는 자율적인 선행을 원했다. 그는 1559년 2월 26일에 동부 프리스란트(Ostfriesland)에⁷²⁾ 사는 포피우스(M. Poppius)에게 쓴 편지에서 신앙인들이 가난한 자를 과소평가하여 그들에게 도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돋지 않을 때에,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훈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⁷³⁾ 그에게 있어서 선행은 역시 자발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교회의 도움이 구제를 받는 자들을 계으름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도움요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에게서 인상적인 것은 외국인에 대한 영적이고 육체적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법규이다. 칼빈은 그의 친구의 유산으로⁷⁴⁾ 프랑스로부터 나온 개신

71. 재인용, 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214f.

72. Friesland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프리젠(Friesen)이라고 한다. 이들은 북해를 중심으로 섬 또는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게르만계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독일어와 영어의 중간쯤 되는 프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흩어져 사는 지역을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동부지역 프리젘이 독일에 사는 소수민족이고 서부지역 프리젘이 네덜란드에 사는 소수민족이며 북부지역 프리젘이 덴마크의 남부와 독일의 북부 지역에 사는 소수인들이다.

73. 비교 : 만일 한 인간이 이 세상의 현재적인 삶의 만족으로 부유함 속에서 포효하고 항상 더 크고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재산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소유인 것이다(ICR III 19, 9).

74. 칼빈의 친구인 David Busanton은 1545년 6월 25일에 죽었다. 그는 칼빈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2000Taler(화폐단위 Taler는 순은화로서 그 당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를 유산으로 넘겨주었다. 이것이 그 후 Bourse française 기금형성의 토대가 되었고 칼빈 또한 그의 유서(1564년 4월 25일)에서 이 기금에 10Taler를 증여하였다(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교 난민들을 돋기 위한 하나의 기금을 형성하였는데(후에 이는 프랑스인을 위한 기금으로 불리움 : Bourse française), 이는 제네바 시민이 프랑스 신앙동지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후에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온 신앙동지들을 위한 기금이 형성되었으며, 칼빈이 죽은 후에 17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개신교 독일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로부터 온 사람들이 신성로마제국 안에서 돌보아졌다(Bourse allemande라고 불리움). 이렇듯 개혁된 디아코니가 난민 교회 공동체까지 확장된 것은 귀중한 것이었다.⁷⁵⁾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제네바 시의회와의 문제였다. 시의회는 교회의 이 세상적인 재산을 허용해 주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재산을 교회 고유의 결정으로 사용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의회는 교회의 재산 사용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요구하였고 교회의 관리를 사실상 그들의 손에 장악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적인 교회의 재산을 단지 교회의 의미에서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저항들 앞에서 칼빈은 힘을 축적해야만 하는 절실함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1545년 10월 13일에 노이엔부르크 도시의 목사인 파렐에게 교회 재산에 대한 의견을 촉구한다. “우리가 스스로 한 번도 성취해 보지 않은 것을 너희(시의회)의 권위에 의해 요구받는다면 우리는 너희의 권위가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거나 않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올바른

der Reformationszeit, S. 214).

75. 개혁신앙 때문에 그의 조국 폴란드와 그의 좋은 가문과 그의 빛나는 지위를 버리고 1540년에 Ostfriesland의 수도인 Emden으로 망명한 Johannes à Lasco(1499-1561)는 그곳의 귀족 Enno II 세의 미망인 Anna의 후원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수행하였다. 그곳에서는 1557년 이전까지 교회 안에서 집사직무에 대한 역할이 성례전의 분명 분장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집사들(Diakone)이 문서상에 언급되고 있다. 그는 1550년 영국으로 건너간 후에 Eduards IV 세의 도움으로 한 지방 교회 감독으로서 그곳에 있는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난민들을 위한 디아코니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장하였다(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215f).

사용이 무엇인지를 알며,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이 도시민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적합한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⁷⁶⁾ 칼빈은 법정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교회의 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전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1545년 11월 2일자 파렐에게 다시 쓴 편지에서는 제네바 시로부터 교회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훈급받는 것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으며, 제네바 시는 노이엔부르크 도시를 교회 재산의 사용에 대한 모범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 시의회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⁷⁷⁾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랑의 활동에 대한 교회의 법제정을 통하여 교회의 개혁과 사회적인 질서를 개선하였고, 개신교 디아코니에 대한 정확한 하나의 모범적인 상을 이룩하였다. 칼빈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과제와 병든 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일을 위한 교회의 집사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현정된 것으로 보고, 제네바 시의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해 이 직무가 수용되도록 하였고, 그는 이러한 직무를 실행하는 일에 탁월성을 발휘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개혁—국가법규와 그에 대한 새로운 법규의 모든 범주를 위한—의 유일한 출발점은 물론 세속적인 입법제정이 아니라 성서였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신정정치를 요청하게 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정정치가 실제로 단지 하나님의 신앙적인 삶의 법칙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9. 마치면서

칼빈은 중세 기독교의 총체적인 전통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의 교리는 전적으로 중세 가톨릭 세계를 무너뜨린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더 이상

76. 재인용, W. Bernoulli, *Von der reformierten Diakonie der Reformationszeit*, S. 210.

77. 재인용, W. Bernoulli, *Calvin und das Amt der Diakone*, S. 335.

하나님 존재에로 향하는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면전에서 수평적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신앙인들이 그의 면전에서 수평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인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아주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지적인 동의보다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공동체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는 역시 역사 속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뜻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섬김에로 나아가야 한다. 그의 사고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삶은 하나님께 대한 고유한 섬김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 한복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은 서로서로 침투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사회적 세상적인 차원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사회에 대한 질문들은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이 서로 함께 살며 하나님의 상을 비추어 낼 것인가를 묻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상은 성서 안에 계시된 복음의 총체성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은 역시 사회적 본성이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있는 것이며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인 질서를 개선함에 있어서 함께 일해야 할 것으로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써 그의 임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교회와 신앙인은 사회 속에서 신앙으로 개혁되는 실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의미를 회복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신앙인의 회심과 교회의 섬김을 본질로 하는 기구적인 구조개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를 향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개방적인 지원과 약자들에 대한 돌봄을 위해 교회 안에 이 일을 위한 현정된 직무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집사직이 이러한 임무를 가지는 위치로서 그 고유성—칼빈의 의미에 있어서—을 되찾게 된다면 교회공동체를 통한 사회적인 디아코니는 점점 더 교회와 사회를 향한 개혁으로 도전을 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의 감추어진 모든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신앙인은 모든 문화·정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단지 종말에서야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때에 신앙인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발적으로 청빈하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엄격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이다. 칼빈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 가운데 있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의 디아코니는 섬김을 통한 이웃과 사회에의 전적인 개입과 내어줌에로 도전 받는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